

#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438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 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, 2023회계연도 수입계획 상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7,674백만원에서 14,660백만원으로 6,986백만원 증가하였음
- 나.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지출계획 상 재무활동(예치금) 예산액을 당초 7,335백만원에서 14,118백만원으로 6,783백만원 증액하고자 함

※ 2023회계연도 지출계획 변경내역 (총 6,986백만원 증액)

- ▶ 재무활동 : 6,783백만원 증액 (7,335백만원 → 14,118백만원, +92.5%)
  - ▶ 식품안전위생관리 : 203백만원 증액\* (4,068백만원 → 4,271백만원, +5.0%)
- \* 1·2차 기금심의위원회 변경안 심의·의결을 통한 '식품안전 위생관리(식품진흥기금)' 정책사업비 증액

정책사업명	당초 (A)	1차변경* (B)	2차변경* (C)	3차변경 (D)	비 고	
					증감 (당초대비) (E=D-A)	증감률 (당초대비) (F=E/A)
합계	11,408	11,408 (-)	11,408 (-)	18,394 (+6,986)	6,986	61.2
식품안전위생관리 (식품진흥기금)	4,068	4,160 (+92)	4,271 (+203)	4,271 (+203)	203	5.0
재무활동 (식품진흥기금)	7,335	7,243 (△92)	7,132 (△203)	14,118 (+6,783)	6,783	92.5
행정운영경비 (식품진흥기금)	5	5 (-)	5 (-)	5 (-)	-	-

〈표〉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정책사업별 예산 변경내역

### Ⅲ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 69억 8,6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**재무활동(식품진흥기금)**을 당초계획 대비 67억 8,300만원<sup>1)</sup> 증액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2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<sup>3)</sup>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
  - 따라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식품진흥기금)**을 당초 지출계획(73억 3,500만원)보다 92.5%, 67억 8,3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

- 1차 변경('23. 3.23) : 식품안전 위생관리(9,200만원), 재무활동(△9,200만원)

- 2차 변경('23.10.11) : 식품안전 위생관리(1억 1,100만원), 재무활동(△2억 300만원)

※ 「지방기금법」 제11조 단서규정(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에 따라 의회 의결 없이 자체변경

- 3차 변경(금번 변경안) : 재무활동(67억 8,300만원)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3)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('22. 7), p.296

〈표 3-1〉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 A )	1 차	2 차	변경안 ( B 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지 출 합 계	11,408	11,408	11,408	18,394	6,986	61.2
식품안전 위생관리(식품진흥기금)	4,068	4,160	4,271	4,271	203	5.0
재 무 활 동 ( 식 품 진 흥 기 금 )	7,335	7,243	7,132	14,118	6,783	92.5
보 전 지 출 ( 식 품 진 흥 기 금 )	7,335	7,243	7,132	14,118	6,783	92.5
여 유 자 금 예 치	7,335	7,243	7,132	14,118	6,783	92.5
행 정 운 영 경 비	5	5	5	5	0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,  
 ②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3.10.16), ③2023년 제1·2차 식품진흥기금 변경 심의자료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지난 6월, '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시 잉여자금 예치 총액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증가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어<sup>4)</sup>, 이미 지난 6월부터 제출 가능한 사안이었을 것으로 판단됨
- 그럼에도 동 기금의 경우, '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'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금번 정례회에 같이 제출함으로써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금번 정례회중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'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,
- '22회계연도 기금 결산결과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'23회계연도 종료가 도래한 시점이 되어서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 결과를 예단하여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형식화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4)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「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」 ('23. 6), p.20